

제391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2월1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62)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3)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7)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9)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8)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5)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57)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5)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8)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6)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84)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7)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8)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6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75)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26)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69)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78)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35)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96)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73)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60)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65)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2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15)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3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6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89)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29)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93)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9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2)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1)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8)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6)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5)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5)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60)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2)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6)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0)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04)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5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32)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41)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2)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7)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79)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2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5)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1)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1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3)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7)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3)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6)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1)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67)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07)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1)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9)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30)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7)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15)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2)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10)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44)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1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7)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4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9)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03)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11)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17)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3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7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83)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2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04)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3)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7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8)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5)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1)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00)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40)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82)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4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1)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3)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5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2)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98)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08)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47)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1)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73)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93)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0)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92)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94)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37)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6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8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95)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97)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00)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06)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25)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7)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8)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6)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9)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2)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8)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6)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7)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91)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06)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6)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8)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30)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32)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96)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77)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19)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37)
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68)
1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44)
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06)
1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5)
1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9)
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97)
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8)
1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9)
1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49)
1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73)
1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45)
1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03)
1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31)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95)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30)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1)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4)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2)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2)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51)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85)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74)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48)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02)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28)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26)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01)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03)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28)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09)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2)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3)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1)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1)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2)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4)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38)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50)
1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72)
1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44)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04)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29)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27)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94)
1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06)
1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27)
19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4)
1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3)
19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3)
19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26)
1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52)

상정된 안건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2) 10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3) 10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7) 10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10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8) 10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05) 10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7) 10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5) 10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10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6) 10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10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7)	10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	10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1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5)	10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6)	10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9)	10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8)	10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10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6)	10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73)	10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3)	10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10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5)	10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10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10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5)	11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89)	11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9)	11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3)	11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7)	11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2)	11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1)	11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1)	1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8)	11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2)	11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6)	11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11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7)	11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11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11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5)	11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0)	1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1)	1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2)	11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11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0)	1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7)	11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11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7)	11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2)	11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11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2)	11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7)	11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9)	11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8)	11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5)	11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1)	11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4)	11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0)	11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1)	1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3)	11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7)	11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3)	1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6)	11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1)	11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7)	11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7)	11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7)	11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1)	11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12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7)	12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9)	12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0)	12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0)	12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7)	12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9)	12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5)	12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12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0)	12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12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2)	1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7)	12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8)	12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9)	12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3)	12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12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7)	12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8)	1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6)	12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1)	12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3)	12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6)	12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4)	12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2)	1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3)	12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1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5)	12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8)	12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5)	12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1)	12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0)	12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0)	12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2)	12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0)	12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1)	12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3)	12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2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12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8)	12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8)	12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7)	12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0)	12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1)	12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3)	12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3)	13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20)	13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2)	13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4)	13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7)	13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3)	1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6)	13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5)	13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7)	13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0)	13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6)	13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5)	13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7)	13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13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6)	13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9)	13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3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8)	13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6)	13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7)	13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1)	13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6)	13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13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13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13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2)	13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13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7)	13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13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13
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8)	13
1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4)	13
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6)	13
1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5)	13
1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13
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7)	13
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13
1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9)	13
1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9)	13
1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13
1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13
1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13
1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13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13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13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14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14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14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14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14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85)	14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14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14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14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14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14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14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14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14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9)	14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14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14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14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14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2)	14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14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14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14
1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14
1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14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14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14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14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14
1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14
1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14
19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14
1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14
19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14
19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14
1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14

(09시37분 개의)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지방세법 관련 심사를 위해서 연일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역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법률에 대한 의결은 전체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종합하여 정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2)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3)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7)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8)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05)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7)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5)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6)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7)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5)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6)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9)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8)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6)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73)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5)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89)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9)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3)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2)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1)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8)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6)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5)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0)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2)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0)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2)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2)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7)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9)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5)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1)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3)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7)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3)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6)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1)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7)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7)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1)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9)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0)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7)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5)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0)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7)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9)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3)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7)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3)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4)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3)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8)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5)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1)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0)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0)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2)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1)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3)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8)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8)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7)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1)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3)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3)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20)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2)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4)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7)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5)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7)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0)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6)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5)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7)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6)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9)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8)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6)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7)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1)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6)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2)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7)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8)
1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4)
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6)
1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5)
1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7)
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1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9)
1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9)
1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1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1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1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85)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9)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2)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50)

1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1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1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1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19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1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19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19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1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7항까지 이상 19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어제 하던 것 다음부터 주제별로 검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어제 책자 4-2의 374페이지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376페이지, 74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74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으로서 2건의 개정안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등의 건으로서 정일영 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고, 구자근 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24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동일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에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167조의2에서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 공제·감면되는 경우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10%를 공제·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이 법에서 별도 감면 규정을 마련할 실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부안이 통과되어 2024년까지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조특법 개정에 따른 자동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 검토로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조특법이 통과됐으면 이것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통과가 됐으면 저희가 자동으로……

○소위원장 박재호 자동으로 되는 거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기간만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일괄 10% 감면하는 것을 2년으로 설정을 하는 정부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만 통과되면 그대로 가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형석 위원 차관님, 정확히 해 보게요.

조세제한특례법이 확정이 되면 이 법은 자동적으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 개연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방세정책관입니다.

법 조문에, 그러니까 국세인 소득세가 감면이 되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10% 감면한다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명문화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우종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75면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서 2030년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세제 지원이 또한 가능하며 이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연동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동돼서 처리하는 걸로.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82쪽입니다.

76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 대해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서 차년도 심사에 도입도 가능한 점 그리고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 감면 규정을 신설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동일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84쪽입니다.

77번,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 공제의 합리화 부분입니다.

현행은 국세인 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하면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면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에 세액 공제를 하고 이에 더하여 영세사업자 등 신고간소화 대상자는 납부 시 전자신고로 간주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세의 전자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방세 전자신고 여부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지방세를 전자신고하더라도 국세를 서면신고한다면 지방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현행 제도에 하에 있었던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세액 공제 및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정부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87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으로서 폐업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위해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범위를 국세 개정에 맞추어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체납액의 징수 특례 대상을 가산금에서 가산금 플러스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가산금 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포함시켜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이에 맞추어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 특례도 납부지연가산세

를 그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의결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90쪽입니다.

권성동 의원안에서는 별장을 감면 제외 대상 규정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항 177조에서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감면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별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3년에 도입된 별장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48년이 지난 현재 국민의 의식·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이 법안과 같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심사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안과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뒤에 세법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정리를 하시면 이 조항이 의미가 없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민철 위원 궁금해서요. 별장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별장이 면적 기준, 가액 기준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게 좀 이상한데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그래서 예전

에는 별장이 사치성 재산으로 모든 세금을 중과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뒤쪽에 지방세법 논의 시에 논의가 될 겁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짜 별장은 아예 그것도 제외되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그 별장 말고.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지금 같은 개념 정의는 아니고 면적이 지나치게 크거나 가격이 높거나 하는 것은 사치성, 그러니까 고급주택이라고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철 위원** 고급주택으로?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예.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뒤에 가면 별장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정확하게 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예, 뒤에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92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안들로서 첫 번째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제외 대상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은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매 회 세액을 합산한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고 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연결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합산한 것이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토지나 대단위 집합건물을 취득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제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안과 같이 취득세액의 산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최소납부세제의 회피를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95쪽입니다.

개정안들은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상을 각기 정하고 있는데 오영훈 의원안은 마을회, 양기대 의원안은 전공대학 그리고 정부안은 환지계획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을회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유예되다가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마을회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대해서 24억 1100만 원이 감면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105억 1800만 원이 감면되었는데 취득세는 건당 146만 원, 재산세는 건당 7만 원 정도가 감면된 것입니다.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 재산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초과 시에 적용되므로 2020년도 감면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마을회 등이 실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납부세제는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필요성에서 도입된 점, 실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마을회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공대학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2020년도 개정 당시에 전공대학의 도입 배경이나 전문대학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범위를 학교와 유사하게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나 최소납부세제 적용은 배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배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안에서 환지계획 취득 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를 하고 있는데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유사 규정에 대해서도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

제되고 있는 점,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종전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뀌 주는 처분으로서 소득세법에서도 양도로 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정부 제출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전공대학과 관련해서 전공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아서 설립됐고 또 학력도 지금 전문대학하고 같이 동등하게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특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전문대학과 같이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전공대학이 학력 인정 이런 부분에서 전문대학하고 유사한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근거법 자체가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한 유형이고요. 그래서 전문대학처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하고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형석 위원 법적 근거는 다르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 평생교육시설은 50%만 감면해 주다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00% 감면하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소납부세제, 그러니까 15%는 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공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2년 연속으로 감면율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법안 심사할 때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나 학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납부세제 배제 혜택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은 좀 더 검토를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00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은 부동산투자기관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 취득 또는 회사 설립 시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서 개발사업 활성화 및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대상 중 법인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02쪽입니다.

개정안들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인 소득세를 세액 공제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세액 공제나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이달곤 의원안은 2025년까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액 공제·감면이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나 감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원활한 징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 방식이 아닌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되어 세액 공제 및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이 소득세 세액 공제·감면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독립세 전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통 시점이 조금
연기가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2023년까지 2년
연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정부 제출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
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04쪽, 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부분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최
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현행은 2022년 1월 1일부
터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되는 것을 2028년까지
유예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지방농수산
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
용 유예를 1년 연장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두
기관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에 지속적
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적자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재정난을
겪는 지방공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에 해당하는 지방공사들
은 최근 어느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도시
철도공사에 비해 담세력을 갖춘 측면도 있다는
점을 비취 볼 때 기관의 납부 능력과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유예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지방세 특례가 3년
의 기간으로 부여되어 왔음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
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합시오.

○김민철 위원 이게 1년 뒤에는 그러면 유예 안
하실 생각인가요? 1년 뒤에는 끝낼 생각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감면 일몰 도래가 그
때 오기 때문이에요 그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
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자꾸 1년 1년 이렇게
해서 정부안을 내지 마시고 제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어요, 매
년 이렇게 1년 1년 하면. 그러니까 정말 몇 년
몇 년 이렇게, 아니면 한 번 더 그대로 연장을 해
서 그 안에 검토를 해서 종결을 짓든 아니면 더
해야 된다는지 이런 결정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06쪽 이하에서
는 다른 법률 개정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 안들
을 모아 놓은 부분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84번은 서범수 의원안으로 조례 등으로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제2차 재난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범수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을 통해서 제2차 재난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현행법 시
행령에서도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서는 조
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이 있으므로 현행법을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타 법 개정 선행에 따
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갑시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09쪽, 85번입니
다.

양정숙 의원안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
차로 명칭을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이를 지방세특례법에도 반
영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14쪽입니다.

86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서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반영한 후에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25쪽입니다.

425쪽은 민형배 의원안으로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이 법은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427쪽입니다.

88번은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으로 이 개정안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률안의 심사 경과에 따라 심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38쪽입니다.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에너지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경과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42쪽, 90번입니다.

권명호 의원안에서는 거주자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부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 과세 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역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고 조세법도 동일하게 발의되어 있는바 해당 법률들의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상으로 소위 자료 4-2권에 대한 심사를 마쳤거든요. 이 건 역시 의결은 법률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끝낸 후에 종합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 설명해 주십시오.

5-1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그러면 다음으로는 법안 심사자료 5-1입니다.

5-1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관련 사항으로 첫 번째 사항은 정부 제출안으로 상속 개시 후 폐차 등록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또는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속 개시 후에 피상속인 명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 말소하는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상속 개시 이전에 차령초과 등으로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정부 제출안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한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쪽입니다.

○김민철 위원 차량 한 가지만……

○소위원장 박재호 잠깐만……

○김민철 위원 차령 초과를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10년 이상 승합차,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이렇게 자동차등록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10년, 11년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10년에서 12년.

○김민철 위원 12년?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사항입니다.

3쪽,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개편 사항입니다.

현행은 유상 및 원시취득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자기과표결정 방식으로 하고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유상·원시취득은 개인이나 법인 차별 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그리고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한편 취

득 유형별로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여 무상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 특례 그리고 간주취득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조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취득 주체 및 취득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표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사실상 취득가격, 즉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세 부과 원칙적 기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유사 거래 관계에서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가액을 취득세의 원칙적 과세표준으로 정함으로써 실질과세나 과세공평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개인 간 거래에서 과세 당국이 실제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의 운영,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및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등을 통해서 실제 거래가액 확인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취득 주체별로 세 부담이 달라지는 차별을 해소하여 공평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은 대국민 홍보나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및 관련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한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0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에서는 증여 등 무상취득으로 인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단 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속인의 경우는 9개월 이내에 하되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번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2023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 비해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점을 반영하고 현행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2쪽, 4번입니다.

정부 제출안에서는 당초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납부한 후에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제외 대상은 수정신고하여 증액된 시가인정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2023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가인정액을 신고·납부한 후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등기 일정 등의 문제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전에 시가인정액을 우선 신고하고 등기를 종료한 후에 정확한 평가를 거쳐서 높은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성실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측면에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4쪽, 5번 사항입니다.

정부 제출안에서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성실 신고에 대한 추징이 보다 용이해지므로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26쪽입니다.

6번은 별장의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개선하는 권성동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심사하셨던 지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와 함께 하시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별장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취득세는 별장 취득 시 일반 취득세율에 8%를 가산하고 있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별장인 경우에는 4%의 고율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별장에 대한 중과 규정 폐지는 당초 중과 규정의 도입 목적인 사치적이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재산의 보유를 억제한다는 도입 목적이 현재도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별장은 객관적인 기준이나 용도로 구분되는 회원제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비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고 주거용 건축물이므로 대규모 호화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규율이 가능하고 실거주 주택 이외의 추가 주택 보유 문제는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문제로 규율이 가능한 점 그리고 최근의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하면 별장이 반드시 사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전문위원님하고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결론에는 동의하는데 한 두어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별장이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법에 정의돼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상시 거주하지 않는’ 이렇게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별장 금액의 어떤 시가라 그럴까요? 고려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현재 별장의 개념에는 별장의 가액 기준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빨리 이 용어 자체가 통용될 수 있는 말인지 한번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추이를 봤을 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경상북도 같은데 어제오늘…… 인구소멸 위기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지역 살기’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경기도 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던 분들이라도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취득하는데 있어 가지고 장려하거나 또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낙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관께 여쭙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소는 한 곳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거소 개념이든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두 명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주소 내지 거소의 개념을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주소 개념이 위낙 옛날하고 다른 국토 개념이니까, 교통도 발전해서. 2개 주소 개념 또는 원주소 내지 거소 개념을 제안해서라도 소멸되는 지방을 막아야겠다는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거나 정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소를 복수로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도 일부 있었고요.

○김형동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별장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지방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받아서 이번에 별장을 삭제하는 거고요. 이 별장 문제와는 다르게 이미 취득세 중과제도라든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중과세율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정법 체계나 또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 주소 개념이 하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복수 주소 여부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소 개념의 또 다른 걸 둬으로써 지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말씀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하여튼……

하나만 더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안에 지방, 경상북도나 전라남도에서 취득하는 주택도 2주택 안에 들어가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들어가지요.

○김형동 위원 아직도 예외에 대한 논의만 있지 정리는 안 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중과 대상으로 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바깥 지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저희 세율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중과지역이라는 것도 표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 특히 행안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금이 늦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과감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차관님, 별장 부분이 없으면 다 주택자로 해서 8~12%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 이미 다른 조세제도를 통해서도 통제가 되

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매모호한 개념과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별장을 별도로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민철 위원** 저는 정리를 하실 때,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래도 이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집을 사는데 그걸 별장으로 거주하지 않는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있지만 진짜 별장…… 우리가 처음에 사치성으로 보던 별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없애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개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에는 이미……

○**김민철 위원** 그것도 놔두고 이것도 놔두고 해야지요. 고가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지요. A·B·C·D라는 집이 작은 데부터 큰 데까지 있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그걸 맞춰서 놔둘 수 있는, 그것은 별장으로, 그러니까 별장 용어를 지금 없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다 없애는 것보다 진짜 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살려 놓는 게 낫겠다. 똑같은 다주택으로 해서 그냥 주택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고급주택 부분으로도 취득세 8% 중과 제도가 있고요. 다주택자, 법인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엄청난 중과제도가 있고요.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이외의 별장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부동산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김형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외 지역에 별장과 유사한 형태를 소유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역의 소멸이라니까 무조건 가서 지역에 있는 별장 형식으로 매입해서 인구를 늘리고 이렇게

더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또 나중에 가서 진짜 별장 형태로 해서 그냥 전부 그런 형식으로 사람은 살지 않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 디테일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주택이라는 게,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집이 있어도 시골에 조그마한 집을 지었는데 그것까지 중과를 하는 것은 과하다……

○**김민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 않고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이런 측면이고 그러면 국민정서에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는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의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고급주택이라 함은 대지가 200평 이상, 건평 100평 이상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나 과다한 수영장 그런 부분은 이미 고급주택 범위에 들어서서 8% 중과, 그러니까 엄청난 중과를 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급주택의 개념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똑같이 시골에 조그마한 집을 지었는데 그것까지 8% 중과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찬성을 한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 결정 자체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게 맞는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에 과다하게 대지를 보유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수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원님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데는 대지가 200평 이상 되면 호화주택으로 돼서 또 다른 통제 범위, 관리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장을 존치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김민철 위원** 다시, 별장을 삭제하는 것과 삭제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 얼마나 있어요? 큰 문제가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느냐고요?

○소위원장 박재호 중과세되느냐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말씀드리면 별장의 지금 법률상 개념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이 살아 있는 이상은 어디든지, 그러니까 상시 거주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중과를 때립니다. 그러면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집에 가서 밤에 불이 켜졌나 아니면 수도요금이나 매달 일정 금액 나오는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치단체 일선에서 제일 어려움이 우리가 그러면 밤에 나가서 읍면리까지 쫓아가 가지고 일주일 내내 불이 켜지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소하고 주민등록증 되어 있는 것과 확인하면 되지요, 두 군데는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상시 거주라는 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상시 거주……

○김민철 위원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그게 아니고 실제 사람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도 그것은 사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그 소유주, 집의 소유주가 상시 거기서 살고 있느냐가 증명 안 되면……

○김민철 위원 증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한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 그냥 확인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되어 있고 거소를 거기에서 한다고 할 때 본인이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것 확인하는 것도 맞지가 않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아까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었던 다른 종류의 재산과 별장이 이렇게 병렬로 즉 같은 취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카테고리 안에 별장이 시대 상황에 안 맞고 다른 것들과 가치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삭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이 법에서 정리가 되면 여기 감면 제외 대상에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요트 같은 것이 다 들어와 있는 데 별장이 들어와 있

는데요, 별장이 73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휴양·피서·전원생활용 이런 것들이 그때 상황, 정서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별장이라는 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살려놓고 별장이라고 함은 정의를 따로 해 놓으면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까 그러면 여러 가지 죽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금 시대에 그게 많이 맞겠어요, 일정 부분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것을 놔두고 별장의 정의를 명확하게 그 부분만 더 넣어 놓으면 되지 이것을 삭제해서 뺄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별장을 빼느냐 안 빼느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말씀 듣고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춘식 위원 차관님, 별장을 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평 이상이라고 나와 있나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별장에는 면적, 가격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면적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예, 맞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여기에 대한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사실 가 보면 호화주택은 아닌데 면적 기준이 우리 상식 밖으로 좀 넓다, 그것은 시골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별장으로 규정해 가지고…… 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호화주택으로 해서 세금이 중과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개념 정립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200평 이상의 대지, 100평 이상의 건축물 시골에는 이것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 별장으로 해야 되느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초과되는 것은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8%의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고급주택으로 저희가……

○**최춘식 위원** 실제로 가 보면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게 문제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리고 또 공시가격 9억 이상 이렇게 되어야지, 앤드 앤드 앤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간 것은 고급주택으로 중과 처분이 되기 때문에 200평 이상의, 100평 이상의 건평에 공시지가가 9억 이상 이렇게 되면 제한이 되지요.

○**최춘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개념상에 그런 거니까 별장에 대한 부분 또는 호화·고급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파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오늘 이 문제, 이런 중점 사항 또는 우리가 논의한 사항에서 한 것을 잘 체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또 이야기도 말씀도 듣고 해서 딱 정립을 해서 내일은 다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31쪽 이하에서는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주민세 관련 사항으로서 먼저 정부 제출안에서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1쪽은 레저세 온라인분은 과세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발매는 장외발매소 축소를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장외발매소 관련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발매는 그 소비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데 온라인 발매분 세수가 본장이 위치한 곳에만 집중되면 레저세 세수 분산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 발매로 인한 레저세를 전국에 배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경마는 아직 안 들어와 있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아직 경마는 안 되고 경륜·경정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경마가 들어오더라도 특별히 징수하는 데 문제없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위원님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지금 레저세를 걸어서 온라인 판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온라인 판매소가 전국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것은 PC 단말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경마에 관련된 장외발매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지역 내의 건물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판매되고 이런 게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됐든 장외가 됐든.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본장, 실제 오프라인 게임을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영상 중계하는 장외발매소라는 물리적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베팅을 할 수 있게끔 경륜·경정에서 올해 8월부터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추적을 해서 스마트폰 소지자의 위치가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 천안시나 이것을 다 확인할 수 있으면 매출액에 기여하는 비중이 다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김민철 위원**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되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아마 할 수는 있는데 베팅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계속……

○**김민철 위원** 어느 지역인지는 다 확인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내가 다른 곳에서 샀는데 그게 어디에서 샀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자

체가 이 온라인 시스템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명의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어느 지역이라는 그 지역 구분이 되면 그 지역에서 판매된, 지역별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 장외가 됐든 다 포함이지요, 여기에는 그것은 안 들어와 있지만 온라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온라인 발매는 전국 단위 소비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단위의 레저이고요. 경마의 경우에는 본장과 장외발매소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한데 온라인 발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단위에서의 발매를 말씀드리려는 것이고요.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발매가 어디 지역에서 많이 발매가 되고 이게 다 구분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좀 더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전국적으로 나눠서 다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맞는지, 이것은 말 그대로 레저세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륜·경정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하는데 그러면 공단이 온라인으로 경륜·경정 마권을 사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계속 받아야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게요.

이것을 지금 전국으로 배분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경마는 장외발매소와 구분이 되어 있으니 그러면 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전체 갈 건가요? 그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경마의 경우에 장외발매소 관련된 부분은 그다음 논의에서 나오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박재호** 지금 경마는 아직까지……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것은 경륜과 경정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온라인 판매에 관한 부분이고요. 뒷단에 경마에 대한 부분이 따로 나오니까 이 부분 논의하시면서……

○**김민철 위원** 이것도 같이 합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뒷단을 논의하시면서

앞단을 다시 또 보시도록 하십시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뒤에 하십시오.

3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4쪽입니다.

레저세 장외발매소분 안분비율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울러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완주 의원안 지방세법에서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레저세 안분비율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본장 소재 지자체에 100분의 50,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100분의 50씩 안분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법률에서는 본장 소재 지자체에는 100분의 20,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는 100분의 80씩 안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도 같이 발의를 하셨는데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이 징수한 레저세의 30%를 제외하고 그 30%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에서는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에 납부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의 70%를 소재지에다가 배분하는 내용이고, 박홍근 의원안은 이 중에 65%를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세 안이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어느 부분에 담을 것인지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시군에 먼저 배분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장외발매소 소재 시도와 본장 소재 시도가 다른 경우에는 본장 소재 시도에 납부되던 레저세액이 장외발매소 소재 즉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지방세법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수입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일단은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지자체 간에 논의와 합의가 조금 더 진행됐으면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지방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렵다라고는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은 있지만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서 자치단체 세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위원님 이야기……

제가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미래에는 앞으로 삼사 년 내에 이 매장들이 다 없어집니다. 본점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다 온라인으로 안 갈 수가 없고 매출 자체가 전부 다 빠집니다. 새로운 업종이 너무 많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부 다 모바일로 하지 가서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구조조정이 돼야 될 시점이 왔고 또 우리가 새로운 레저문화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불법 도박이 더 많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문제가 지금 세수 문제로 첨예하게 되는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삼 년 후 이 업종이 진짜로 내리막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김형동 위원님.

양보하지 말고 김형동 위원님 빨리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제가 좀 먼저 할까요?

○소위원장 박재호 서영교 의원님, 빨리하세요.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예, 소위를 하거나 이럴 때 발의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 지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도 충분히 하시는데 제가 이것 한 가지만큼은 말씀을 미리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고요.

저희 지역은 중랑구인데 경륜·경정·경마, 세가지가 다 있습니다. 경마는 박홍근 의원 지역에, 경륜·경정은 서영교 의원 지역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것은, 경륜·경정이 있는 건물 자체가 서울 상봉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터미널 기

능이 약화되고 터미널을 제가 끝내는 재건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년 안에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륜·경정은 나가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현장에 갔더니 잘될 때 경륜·경정은 1700억 매출이고요 경마는 1200억 매출입니다. 3000억이 저희 동네에서의 매출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중랑구 사람이 약 3분의 2는 되지 않겠는가, 외부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다면 약 2000억 매출이 나가는데 그중에 중랑구로 들어오는 돈이 4억 정도라고, 조정교부금이라고 티켓을 팔고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니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데 쓰이는 비용이지요. 마찬가지로 의정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이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와서 돈을 잃고, 돈 따는 사람은 몇 있겠지요. 잃고 술을 또 동네 주변에서 다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집에 가서 부인하고 싸우겠지요. 그러고 나면 부인을 때립니다. 그러면 때리는 것을 보고 애가 또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은 집밖 청소년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런 공간이 있는 것은, 지역에 봉제공장이 있었습니다. 봉제공장 사장들이 열심히 봉제를 가르쳐 놓으면 월급받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 있나 찾아보면 경륜·경정에 가서 돈 잃고 창피하니까 그다음에 안 나오고 그 주변을 맴도는 노숙자처럼 지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에게 봉제공장 사장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추적하게 된 거고요.

동네 밖 아이들이 그렇게 집을 안 들어가서 ‘저 날라리들’ 이랬더니 나중에 그 아이들하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은 레저를 하고 즐기고 좋은 스포츠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순환이더라. 그러면 이 동네의 악순환을 나는 공부도 잘하고 내 자식도 그러니까 그런 것 안 하니까 살지만 교육까지 다 망쳐 버린, 정말 누구의 레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레저세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적은데요. 3000억을 매출하면 그중에 300억이 레저세로 나갑니다. 그중에 150억이 경기도로 가고요 150억이 서울로 오

지요. 서울에 온 150억을 서울이 일정 쓰고 나머지 일부를 25개에 골고루 나눠 줍니다. 돈은 왜 우리 동네에서 벌어서 가고 골고루 나눠 줍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150억 중에 일부는 딱 떼어서 중랑구로 먼저 줘라 그리고 의정부로 먼저 줘라, 이렇게 해서 제가 낸 것은 박완주 의원하고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본장으로 가는 레저세는 건드리지 말자, 50 대 50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울로 오는 레저세 중에 아니면 의정부처럼 경기도로 가는 레저세 중에 일부는 떼어서 곧 중랑구에다 줘라 그리고 중랑구에다 주되 그 돈은 아이들이나 부모나 어려운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고 재활하는 데 쓰게 해라, 이게 저의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300억 벌어서 150억 중에 70%는 내나라 이게 제 취지인데요. 행안부가 계속 신중 검토를 이야기하고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가 얘기하는 걸 왜 듣습니까? 저는 이런 현장을 행안부가 가 봤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가 보고 이야기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던 다른 지자체가 돈을 못 받게 되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장외발매소가 있는 곳에 먼저 떼어 줘야 됩니다’라고 동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을 지금 내려고 제가 왔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원님, 충분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김민철 위원님, 의정부에 있으니까 말씀하시지요.

○김민철 위원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아마 충분히 차관님, 정부 측에서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 시군구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정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시군구 협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걸.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민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발매되는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우선 해 줘야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빠져 줘야 되겠지요, 거기에.

의정부 같은 경우도 3개 다 있습니다, 경정·경륜·경마까지. 그러면 금요일부터 주위에 보

면…… 시청 앞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또 그 주변, 꼭 그 안의 건물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 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의정부 시민들이 제일 많이 갈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거기서 벌어서 다른 데다 쓰게 하는……

그리고 만약에 어디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그 지자체에 설치하라고 그러면 되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래 합시다, 차관님.

이것은 해마다 있어 왔던 문제고 또 행안부 답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은 강남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굳이 꼭 어려운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좀 더, 이번에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통과한다라는 의지를 딱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행안부차관님이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설명 다 드리고 이래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하면 길어지니까.

○김형동 위원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레저세 온라인분 아까 한 것하고 이게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방금 두 분의 취지에 내가 또 다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러합니다.

온라인으로 경륜·경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구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어디까지가 온라인 구매라 하는지 상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과세를 할 때 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발매할 때는 납세지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구매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니까, 일어나니까. 그런데 경정·경륜 이 상품 말고도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유독……

제가 알기로 본사에다 그냥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본점 주소지 있거나 특별히 별도 법인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데 경륜·경정에만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위원님, 지방세법에 들어와 있는 레저세에는 경마·경륜·경정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한 것들은 각각 별도 법에 따라서 별도 법에 규정이 된 대로 세제와 배분의 문제가 정리돼 있고요. 저희 지방세법에 들어와 있는 레저세에 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 인데요.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의 문제는 아니고요 본장에서 거둔 세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사회가 본장에 100을 다 내고 그다음에 장외발매소에서 걷은 것은 마사회가, 그러니까 본장에 50 내고 그다음에 장외발매소에 50 내고. 그다음에 온라인 발매라는 새로운 수단이 생겼으니 그것을 마사회에서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에 돈을 얼마 어떻게 낼 것인가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 자치단체에서 저희 안은 인구수 비율대로 나눠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 정부안을 낸 겁니다, 경륜·경정만.

○**김형동 위원** 정부안을 냈고 좀 전에 통과된 것은 구체적인 것은 령에 위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주 우둔한 질문인데 경상북도에서 경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라인으로. 죄송합니다, 경륜·경정을.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경륜과 경정만 열어 놓고 있고 경마는 아직 안 열려 있고요.

○**김형동 위원** 경정, 2개인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혹시 국민들께서 경마를 온라인으로 하시고 있는 건 불법입니다.

○**김형동 위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질문할게요. 그냥 단순합니다.

경륜·경정을 경상북도민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럼 좀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륜·경정 본부 세수가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출이 많이 일어난 곳에 경륜·경정 본부가 지자체별로, 특히 경상북도에 얼마라도—n분

의 1 개념 쓰겠습니다—내려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그런 취지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니까 전체에 똑같이 준다 이 말입니다.

○**김형동 위원** 장려를 해야겠는데……

○**김민철 위원** 그쪽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더라도 그런 데 쓰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김민철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분에 대한 것하고 경마하고 정리를 같이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재호** 경마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김민철 위원** 장외발매소.

○**소위원장 박재호** 경마는 온라인 참여가 안 됐고 장외발매소는, 경마는 저쪽의 농수산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민철 위원** 아니, 레저세에 대해서요. 지금 이것 레저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앞부분 경륜·경정에 대한 온라인은 열겠다라는 말씀을, 앞단의 그것은 정리가 된 거고요. 뒤의 경마에 대해서 세금 거둔 것 그 부분을 어떻게 안분할 거냐에 관한 문제만 남은 걸로……

○**김민철 위원** 앞부분은 아까 것 정리를 한번 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2쪽입니다.

42쪽은 김철민 의원안으로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선과 재정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방소비세 세율 21%인 것은 2018년 10월에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서 종전 11%에서 19년에 15%, 20년에 21%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으므로 개정 법률의 시행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4쪽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세율의 읍면동별 차등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은 주민세 개인분 세율을 1만 원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는 1만 원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하여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로 세율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재원으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참여사업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세 한도 제한이 있고 읍면동별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며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는 표준세율을 법에서 정하고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주민자치권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주민세를 읍면동별로 나누게 되면 그 지역의 뭐랄까, 나는 이쪽 동에서 사는데 주민세 얼마, 이것 좀 지역을 너무 혼란스럽게 편가르는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렇게 읍면동별로 차등을 뒀서 걷는 주민세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주민세를 그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한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

각이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다른 읍면동에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겠다라는 사례들이 있어서, 전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부 대도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울산 등등에서 실험적으로 되고 있어서 현장자치나 주민자치의 뜻에 맞춰서 이 정도의 자율적인 결정은 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김민철 위원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 재원 마련을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저는 좀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자치권 확대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그 뒤에 문제점이, 만약에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개정할 생각이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게 지자체별로 주민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지역 내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시에 10개 동이 있어요. 그 열 동에서 A·B·C·D 10동까지 구분을 해 버리는 그 동 등수, 차등을 둘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은 고려가 됐었는데요. 지방자치제를 기본적으로 실시한다면 지방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거고요.

특히 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자체 내에서도 주민청구로 원하는 지역, 읍면동별로 원하는 데가 있으면 더 건어서 그 주민자치……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안이 그거예요. 부동산하고도 관련지어질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또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은 지방자치, 지방정치 영역에 맡겨도……

○김민철 위원 이것은 저는 숙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것은 논의를 좀 더 해서 김민철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시고 내일 하도록 하시지요.

최춘식 위원님부터.

○최춘식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소위원장 박재호 예.

○최춘식 위원 차관님, 이게 요즘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자치회하고 직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주민세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지요? 개인분도 있고……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세 가지입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 개인분만 영향을 받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 주민세를 부과 가지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다 소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주로 그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것에 이것을 쓸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게 예산으로, 세입으로는 다 들어오는 거고요. 그 지역의 더 건넨 주민세에 대해서는 그 주민,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어디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춘식 위원 의회에서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동별로 이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다 들어오고요. 그 세입 중에서 어느 읍면동이 1만 원 건넨 것을 1만 2000원을 건어서 2000원 부분이 더 있으니까 그 2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더 걷은 지역에서 예산을 제안하고……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읍면동에

서 올리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럴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에 의해서.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결정하나, 읍면동에서 누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방의회가 결정합니다.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동네 이와 같은 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그러면 최초에 그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최춘식 위원 결국 주민자치회가 한다는 뜻이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최춘식 위원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자치회도 의사결정의 단위는 될 수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추가적으로 더 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우선사업 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고 실제 또 그렇게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방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특별히 하겠다든가……

○최춘식 위원 지금 자치단체에서 내려 주는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게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일부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읍면동에 내려 주는 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대략적인 시군별로 보면 약 3억,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마을 단위, 리 단위의 사업계획을 이장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지요, 지금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도 듣습니다.

○최춘식 위원 아니,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지요.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개발자문위원회의 그 후신으로 그 권리를 다 받은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현재 하는 것처럼, 여기에 따른 이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도 거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쳐지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시행계획 이런 것 다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법안만 마련 하시는 겁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저희가 법에서 정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항들만 정해 주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누가 어느 주체로 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할 것까지를 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춘식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이 자체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지방자치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와서 논의드리고 하는 거지요.

○**최춘식 위원** 지금 그것이 논의 안 된 상태에서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이 있어도 읍면동에서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길만 열어 놓고, 제도적인 틀만 열어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게 생기는지 저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논의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심도 있게 좀 논의해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할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어쨌든 이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끝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곳이 여야 이런 것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법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조례로 하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획일적으로 얼마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다른 데서는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있다 이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형동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더해서 우려 사항을 한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읍면동은 주민세를 안 내도 되는 거지요? 그럴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니, 안 낼 수는 없고요.

위원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1만 원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김형동 위원** 제 말씀은 사실상 감면 수준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세는 필수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김형동 위원** 예,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인두세 개념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이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과한다면 가장 그냥……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최소한.

○**김형동 위원** 조세 저항이 없는, 조세 개념이 없는 등록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라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납세 의무가 돼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부작용도 있나 하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정이 풍부한 데는, 제가 처음 여쭙봤지 않습니까? 서울시 강남구 같으면 다 싸그리 그냥 강남에서 해 줄게—예입니다—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세 형평에 대한 문제도 우려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게 자치권을 더 준다고 그러지만 그 자치권이 힘 있는, 돈 있는 자치구는 더 누리게 되고 영세한 데는 더 어렵고, 저기는 깎아 주는데 왜 우리는 안 깎아 주냐, 안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또 반대로 생각……

○**김형동 위원** 제 생각이 너무 과도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자치의 개념이 어디까지 통용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차관께서 한번 다음 또 논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를 좀 설득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잉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되는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신데요. 예를 들면 조금 여유가 있는 읍면동에서 한 2000원 정도를 더 건어서 그 지역에 쓴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 바깥에 조금 어려운 데는 더 예산이 배정될 수도 있는 거지요. 지자체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조금 여유 있는 데서 더 건어서 자체적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재원이 좀 더 배분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꼭 확실적으로 어느 쪽으로 된다고 하는 걱정은 지자체에 맡겨 두셔도 될 만한 수준의 주민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금 이 개정안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게 행정안전부가 제도 설계 했다가보다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랬잖아요.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치분권2.0 시대에 맞는 그런 개정 법률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맞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지역 간 차등이나 차별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자치분권2.0 시대에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확일적으로 정해졌던 내용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법적 뒷받침을 하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조례로 정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것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차관님 생각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자치회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맞습니다.

○**김민철 위원**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해왔던 게 있고, 그전에 5·16 이후에 그때 이제 주민자치회가 폐지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부활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것을 같이 조금 더 겹쳐서 주민자치권을 좀 확대하자 이런 취지라는 것을, 저는 이 생각인데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맞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 혹시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어제 법안에서도 나왔었지 않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법에다 이 문제를 넣자라고 어제 지방세법에 나왔었고요.

○**김민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주민세를. 그래서 이것은 모든 지자체에서 싫어할 수는 없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맞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나 그 주민들한테 지금 부담을 더 지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별로 다르다면 그런가 보다, 도별로 다르다면 그런가 보다 주민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같은 동네에서 이 동네 옆 동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얼마 내고, 이게 돈의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그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우려 잘 알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생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를 보면 기존의 관념과 관행과는 전혀 다른 생활의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방자치체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탄생된 도시입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또 주민 평균 연령대도 낮고 이런 데서는 이런 방식의 자치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법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법을 고쳐서라도 자기들은 해 보고 싶다고 하는 정책적 요구가 있어서 행정안전부로서는 실험적으로 제도적 길을 확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조금 전의 이 이야기는 의의를 제기했던 위원님들 또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

니까 행안부에서 그분들에게 설명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6쪽입니다.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정부 제출안에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부분을 잠깐 보시면 복권 당첨금과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에 대해서 납세지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일정 등위의 복권 당첨금, 쉽게 생각하시면 1등이 되겠습니다. 복권 1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복권·투표권 판매지에서 납세를 하고 그 이하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지에서 지금 현재 납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조항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권 당첨금 등도 모두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납세를 하되 특정 등위의 복권 당첨금 등에 대해서는 판매지에 납세를 하도록 하는, 납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으로 조문 정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한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9쪽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현행 납세의무자 주소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 즉 물건이 있는 곳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총액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전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 체계를 그냥 둔 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이게 일응 보면 이렇게 전환했을 때 비수도권 지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실제 해 보면 예상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저는 한 가지 말씀이 앞으로 물건이 있는 데에 이렇게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다른 효과가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맞춰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52쪽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현행은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법에 없어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을 통해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일반 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한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54쪽입니다.

국세 환급 통보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개선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국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해당 환급 통보를 받은 날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경정사실 통보에 의해서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이 불가한 오납액에 한해서 적용하며,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급 통보를 받은 날로 설정하고 국세청과세정보 통보 대상에 감액경정도 포함하도록 하며, 법인세 환급 통보 시에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소멸시효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전에, 환급금이 발생할 때 무조건 환급받는 주민이나 국민 본인이 신청해서 받아 가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환급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다 그래서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과세관청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고 해서 직권으로 돌려주는 경우,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데 요즘은 세금을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가상계좌로 넣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소멸시효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세무행정 또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납세할 때, 선택사항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 정보니까. 그런 오납이 생겼을 때는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해 해서 납세행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두 가지 종류 중에 과오납이 확실한 경우는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하고 무관하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금 그러니까 직권 환급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그것은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형동 위원 시행되는데 그것이 돈을 다시 환

급해 준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고지하는 걸로 그칩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환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김형동 위원 환급해 줍니까?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김형동 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나 이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들어갑니다.

○김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57쪽입니다.

57쪽은 무신고 가산세의 특례 적용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기 지방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무신고자에 대해서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전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판단 하에 가산세 면제 기한을 2021년과 2022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대해서 가산세를 1개월 이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 제도의 시행이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59쪽부터는 국세개정안과 연계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첨부서류 미제출 등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 대상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미

제출 가산세를 인용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에 소득세 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의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종합소득 과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면 해당 가산세의 10%를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우 국세는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법체계상 지방세기본법상의 무신고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의 무신고 가산세의 10% 가산이 함께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항을 분리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려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이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특별한 것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63쪽입니다.

중소기업 결손금의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현행은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고 있는데 이를 202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 전 과세연도로 확대해서 2년간 소급공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68쪽입니다.

토지 양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정부안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중과세율을 2% 인상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 개인·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경우에는 1%에서 2%로 가산세율을 조정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세 세율 변동에 연동하여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개인·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국세 세율을 조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국세법 개정에 따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74쪽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서 정부 제출안에서는 국세에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 1인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에 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76쪽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비영리법인 의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특법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78쪽입니다.

재산세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안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중장비학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장비운전학원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장비학원 또한 자동차운전학원과 마찬가지로 교습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토지가 필요한 점, 건설기계는 숙련된 건설기계 운전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숙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학원과 중장비학원은 근거 법률과 해당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데 법령에서 시설 기준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자동차학원에 비해서 중장비학원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80쪽입니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확대로서 개정안들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법률상 분류기준의 예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와 교육

목적에 제공되거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토지를 추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자력·화력발전 시설이나 송전철탑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조세 형평상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앞장서게 하려면 지방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재산세가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소요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과세는 토지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특별한 지원 필요성과 높은 공익성을 가진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까지 분리과세하는 것은 분리과세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교육 목적에 제공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83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그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재산세율과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무허가 주택을 장기간 주택으로 과세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전부터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무허가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실상 현황에 따른 재산세 과세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여 관계법에 따른 인허가 등이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경우 등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이용으로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86쪽입니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판단할 때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개정 전 법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수탁자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에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신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변경된 바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수석전문위원께 체크만 한번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방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보면 산업단지 위·수탁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당시에 김교홍 의원 등이 제안한 것이 이미 해소됐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거든요. கே를 같이하는 내용입니까?

○이형석 위원 뒤에 또 나옵니다.

○김형동 위원 그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 이야기할 때 하지요.

○김형동 위원 지나간 건데……

○이형석 위원 뒤에서 이야기하려고 보류……

○김형동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에 5번 할 거니까 그것 할 때 이야기를 같이하지요.

○김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헛갈려서.

신탁 제도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88쪽입니다.

김교홍 의원안입니다. 담보신탁을 통해서 산업단지의 조성 개발 사업을 시행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4년 시행했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2014년에서 2020년 사이의 산업단지 조성 개발 사업을 담보신탁을 통해서 시행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2010년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 당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 하여 시행자 소유 요건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하게 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2014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시행자가 담보신탁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기준 일인 2014년 6월 1일부터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가 2019년에 나옴에 따라서 그때 인지하였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합산과세 처분에 대해 수탁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자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를 유지하여 왔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준수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동안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산업단지 조성 개발 사업이 담보신탁을 통해 시행한 토지만 7년 동안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약 8년 전 개정된 과거 법률의 경과조치에 새로운 조항을 두어서 소급효를 부여하고 있는데 경과조치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신법이 적용되면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과 같이 당시 법률 개정의 효력을 경과조치 형식으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아울러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김교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담보신탁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개발 사업에 대한 분리과세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물론 전문위원 의견 이런 부분, 법적 안정성이나 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들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들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산단 조성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 산단이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단 같은 경우는 담보신탁의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산단을 조성할 때 담보신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저희가 논의했던 이 신탁재산의 분리과세 적용 규정이 진즉 됐어야 된다고 봐요. 즉 과세 대상이 위탁자로 가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법이 조금 불비했다라고 그럴까, 아니면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법률 때문에 지금 산단에 엄청난 자금 부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평동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 보니까 36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담보신탁을 통해서 산업단지 조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분리과세를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게 산단을 조성했던 자치단체의 그런 절박함,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산단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한 지역들 또 산단에 대해서는 일응 이해는 됩니다만 이 법이 14년부터 20년 사이에 개정이 돼서 적용이 됐던 법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법이나 제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었거나 법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짧은 기한이었다라면 고려의 여지가 있겠으나 무려 6년 동안이나 이렇게 됐었고 또 사전에 예고가 됐던 것이고 또 충분히 인지된 상태에서 제도적 변환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도가 변경됐다고 그래서 이전의 제도나 법체계에서 발생한 사항을 다 소급해서 현 상황 기준으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세심판 제도나 다른 사법기관을 통한 구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법을 소급하는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예는 극히 예외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산단 조성 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담보신탁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그런 과세에 대한 불리함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치단체가? 그런데 어쨌든 2019년 대법원 소송에서 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행정절차나 또는 그런 걸로 해결해라 그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법 개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행정안전부가 이런 건 수용을 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단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일부 소급효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급효를 적용한 사례도 예를 들면 작년에 7·10 정부대책 발표하고 생애최초주택이나 1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 한두 달 사이면 그것을 소급해서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성 보호에

맞다는 측면이 있는데 차관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으로 따지면 7년 전에 발생한 일인데 그것을……

○이형석 위원 기간을 따지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이나 국가산단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담보신탁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영세한 산단 또 민간 산단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과세를 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한 분 더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김형동 위원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보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6~7년 동안의 분리과세, 다시 말해서 김교홍 의원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받아들이더라도 위헌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마지막 단락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김형동 위원 국회에서 논의해서 한번 제안해 보라는 취지로 이해됐고.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예.

○김형동 위원 차관께서 ‘법적 안정성 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네 번째에 적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과세 당국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잘못했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 사법적 구제 방법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썄, 그것은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당시에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에 입주한 개별 법인·회사 소송을 붙여 가지고 남는 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그 소송도 저는 어떻게 보면 유치한 쪽,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지금 이형석 위원님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 대다수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싸움을 붙여 가지고 누가 누구를 이기고 그러면 지역에 유치한 어느 산단의 기업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싸워 가지고 누가 이겼다, 졌다…… 이후에 그 기업이, 그 지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수탁을 받는 거지요. 신탁사 이런 개념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원의 판례는 수탁과 신탁했을 때 담보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소유권도 이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법적인, 민사적인 법리 해석을 해 놓은 것이지 반드시 의무 부담을 내가 해야 된다고, 그것이 최종적인 입법 권한까지 법원이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저게 있는데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산단에 들어와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소송을 통해서 ‘네 세금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방식은 국회가 책임지는 방법도 아니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문제로 미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6년과 6년 이후에, 전후와 비교했을 때 감히 형평성의 문제도 사실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까지 아울러 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오늘 조금 전의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부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법대로 해라 또는 대법원까지 가서 법대로 하면 그 소송을 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치가, 입법활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시고 또 헌법이나 법률상 위배가 되는지 다 검토해 보셔서 지자체의 잘못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 문제 제기했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오늘 회의가 일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오전에 마치고, 이걸 일독을 오전까지 하면 참 좋은데 안 될 것 같으면 내일 최종적으로 조율해야 돼서 식사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 4시나 4시 반부터 한 1시간이나 2시간으로 끝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김민철 위원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소위원장 박재호 예, 그래야 내일 또……

○김민철 위원 내일 아침에 해요.

○소위원장 박재호 내일 아침에 하면 일독이 다 될지…… 하여간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는

때까지 해 보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하는 것이…… 나머지 일독이 더 어려운 게 많습니다, 첨예한 자원세 뭐 이런 게 많아서.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9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은 소유권과 관리·처분이 분리되어 있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인 파산채무자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의 경우에는 소유권과 관리·처분권이 분리되어서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관례의 입장이 일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파산재단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파산재단의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개정안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현행 체계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94쪽입니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취득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경희 의원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된 공시가격에서 취득일 당시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가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과거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재산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재산세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나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주택의 경우에만 취득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세 부담 상한제 등 보유세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 1세대 1주택자

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그 시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96쪽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 지분별로 나누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만들고 그 산출세액에 지분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는데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소유 지분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형태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에 대하여 개정안과 같이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물건에 대해서 소유 형태 및 소유자의 수에 따라서 재산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개별 물건이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개정안으로 인해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면 여러 물건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99쪽입니다.

재산세 물납 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 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분할 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하며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정리나 국유재산 관리, 압류재산 매각 등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 기능 수행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물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집단이 아니고 만약에 캠프 안에, 자산관리공사 안에 그런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전문인력이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감정평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전문기관들이 지정돼 있고요. 캠프는 캠프가 해야 될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꾸 기능을 더 붙여서 평가 기능까지 넣으면 동종업계 간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선행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공정성 시비는 있을 수 있겠지요, 자신이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자산관리공사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평가한 기준대로 업무를 진행했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가기관은 중립적이어야 되고요. 평가기관과 이렇게 부실채권의 정리, 국유재산 관리, 압류 이런 것들에 직접 연결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01쪽입니다.

정일영 의원안입니다. 고령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의 매매, 보유자 사망 시 상속 등 권리변경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의 일부담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납부유예 세부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소득만을 정하도록 하여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산 보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고가의 주택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납부유예 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액 자산가에 대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세부담 상한제 등 일반 국민의 보유세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여러 가지 개정이 있는 등 이미 시행 중이므로 그 시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04쪽입니다.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정부 제출안입니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신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 및 세율 등을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나 공부상 소유자가 사실상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적으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게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이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신고기한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5일로 연장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07쪽 정부안입니다.

법인 보유 주택의 세 부담 상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50%,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별로 130%까지 세 부담 상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 150%를 상한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을 다른 건축물이나 토지와 달리 적용하는 것은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법인의 주택 소유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서는 법인을 통한 주택 투기 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내용은 이미 종합부동산세법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자동차세 관련입니다.

109쪽입니다.

개정안들은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현행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 구조는 2011년 한미 통상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세율 구간을 축소하고 각 구간의 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정부 입장이 행안위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뭔가 제로 아니면 100 그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게임은 없으니까 정부안이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부분은 수년을 두고 논의를 했던 거고요. 한미 FTA의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고요. 저희 국내법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면 EU는요? 한미 관계만 문제되고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면 다른 데는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니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기준으로 하고 다른 나라 자동차에 대해서는 가격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제도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이 상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내연기관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동차들이 범용적으로 쓰여지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산자부는 아니지만 배기량이라는 개념 자체도 무너진 지 이미 꽤 오래됐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내연자동차에 대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점차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정도가 되면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배기량은 이미 그 기준으로서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속히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맞지 무조건 신중 검토 의견만 유지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지방세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자부 관계 기관과 해서 전문적인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산자부하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딱 정확하게 해 갖고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16쪽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와 병기 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18쪽,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개통 지연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과세유예에 따른 시행 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개통 지연과 관련하여 시행 예정 법률의 일부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의결함에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의 관련 규정도 시행 시기를 유예하실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가상자산도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20쪽,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담배소비세액의 1만 분의 4399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교육세액으로 하도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은 지방교육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제외할 경우에 지방교육재정의 악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

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지금 담배소비세액의 1만 분의 4399 이 기준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잘 아시겠지만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1만 분의 단위로 이렇게 세분화해 났고요. 이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이 너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자료를 한번 쭉 보세요. 이것 봤는데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이게 너무…… 어떻습니까? 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하고 정부 제출안 유지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근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 악화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는……

○김형동 위원 다시 한번 여쭙볼게요.

지방 전체의 재정은 그다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 자체가,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교육재정이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의 어떤 수업권이 보장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것은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차관으로서 교육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거나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데 이런 제안을 왜 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 재원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교육 부분에 쓰여지는 거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형동 위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냥 3년 다시 연장하자라는 식의 주문이라 그러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재정이 쓰이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교육이 부족한지 아니면 다른 노인 빈곤 문제가 부족한지 담배로부터 나오는 세금을, 세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좀 더 낫지 않느냐, 불행한 일이지만 학생 수가 줄어 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지만 현 상황의 단면에서 과연 교육재정 관련해서 부족하다 열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관계서 답을 해 주셔야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와 교육부와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하고 연계된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을 놓고 지방에서도 지금 첨예하게 어느 쪽의 재정이 더 위기 상황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세에 관한 일몰기한이 도래했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워낙 복잡한 세제들이, 오죽하면 담배 제세부담금이라고까지 해 났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여기서 ‘일몰을 종결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저 부분은 기재부와 교육부 간에 총체적으로 정리가 될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이것 지방교육재정에 들어가던 게 안 들어가면 당연히 초래할 수 있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입장입니다. 이것을 지금 몇 년째 계속 연장 연장하고 있어요, 차관님?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3년씩 연장을 하고 계시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2001년부터 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한 20년째 이렇게 연장 연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야지 3년마다 이렇게 같은 것을 계속 반복되게 올라오는 것이 행정력 낭비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제가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

게 할게요.

매일 하던 관행대로 하면 참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만 분의 뭐 이것은 참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이 업무를 맡으면 ‘이상하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갑다’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행안부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은 변하는 만큼 또 의문을 가졌으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고쳐내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행안부가 가져야지 직원들도 바꿉니다. 매 똑같은 일은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22쪽입니다.

이해식 의원안은 국세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와 국세교육세를 지방세인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양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안인데 최근 2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시행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은 앞의 지방재정 확충으로 어느 정도 달성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34쪽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숙 의원안은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136쪽은 담배소비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함께 심사되어야 하나 현재 두 가지 안 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연동된 법안 처리와

같이 전문위원 의견 수용합니다.

○**김민철 위원** 한 가지만요.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지금 담배 판매 소비율이 더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게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조금 줄었다라고 판단될 상황에서 또 올라갔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서……

○**김민철 위원** 그러면 그 상태 유지하는 거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거의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민철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행이라고 한 것은 이게 다 연동되어 있다면 그게 갑자기 없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행안부는 혹시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만약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50% 급감을 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위원님, 전통적인 담배와 다르게 신종 유사담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느 범위까지를 담배 범위로 넣느냐, 뒤에도 또 나옵시다만 그래서 아마 일정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담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위해 요소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연동형을 해 놓은 데 대한 부분을 꼭 계속 여기에다 연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어느 쪽으로 담아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면 ‘담배를 많이 안 피워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라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38쪽입니다.

머금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변경하는 백종헌 의원안입니다.

머금은 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현재 g당 364

원에서 20파우치당 1007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의 세율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40쪽,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종배 의원안은 지방소득세 세율을 현행 대비 2배로 인상하고 있으며 권명호 의원안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현행 대비 3배 인상하되 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소득세·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들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47쪽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폐지되었던 민간임대주택 유형의 제도입과 함께 세제 혜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유형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이나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제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의 의결을 전제로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제 감면이나 추정 규정을 다시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반에 법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대신에 내일 아침은 중요한 게 자원시설세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법안이 있는데 가능하면 차관님께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놓으시고 또 위원님들끼리도, 정부 측 이야기만 다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서로 조율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과 보좌진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민철 김형동 박재호 이형석
최춘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서영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규창
지방세정책관 이우종